

제 2 절 저소득 주민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가.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나. 사업개요

- 1)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5월부터 9월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완료하고, 특례기준의 적용 및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여 2000.10. 1.부터 급여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 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1)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12월말 현재 6,296세대 11,71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2006년까지는 세 번째로 수급자가 많았으나, 2007년 12월 현재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급자가 많으며,
- 2) 2006년 10월부터 매월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전입과 2007년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으로 특정보호대상 수급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로 저소득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7.12.31. 기준)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2007년말	6,296	11,711	5,355	10,266	941	1,380	1	65
2006년말	5,442	10,350	5,028	9,695	414	605	1	50

○ 북한이탈 및 사할린 특례수급자 변동현황

(2007.12.31. 기준)

구 분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북한이탈	60	97	170	239	368	506	
사 할 린	0	0	0	0	365	58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007년	25,720,746	20,576,596	2,572,075	2,572,075	

- 1)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총예산은 25,720,746천원으로, 11,7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를 비롯하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7년 동절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12월에 수급자 가구당 24천원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고유가 상황에서 수급자 가구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실적

- 1) 우리구는 2006년도에는 연인원 119,806명에게 20,820,507천원의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한 것에 비해 2007년도에는 총 급여 지원액이 23% 증가한 25,459,760천원을 연인원 135,245명에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단위 : 명, 백만원)

계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월동난방비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135,245	25,657	117,814	23,993	5,424	1,390	328	138	11,679	136

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보호

- 1) 2007년에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민을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가구 1,216가구를 비롯하여 단전·단수가구 등 1600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46가구를 수급자 선정·보호 하였고, 433가구에 대하여 타법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 보호 조치하였다.
- 2) 200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확인조사 및 수급자 중점관리 대상자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권내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경매, 단전·단수, 도시가스 중단, 소액 체납가구 등) 실태조사 및 차상위층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3)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자로 즉시 선정·보호 하고,
- 4) 잠재적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실태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제도에서 누락된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자활지원을 통한 빈곤화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2. 자활급여

가. 목 적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나. 의의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다.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판정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규정)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라. 조건부수급자 유형

취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비취업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 제공 등이 필요한 자

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신청

가.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국민주

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나. 개 요

1) 재 원 : 국민주택기금

2) 조 건

가) 대출액 : 보증금의 70% 범위내

(단위 : 천원)

구 분	대출가능금액	전세보증금 한도	대출비율
저소득가구	49,000	70,000	70%
다자녀가구	56,000	80,000	70%

나) 대출이율 : 연 2%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다) 기 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3) 신청자격

가) 7,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 이하임)

나)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에 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다)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

4) 선정제외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중형자동차 : 1,500cc 이상 ~ 2,000cc미만

나) 부동산 소유자

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마)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

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사)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아)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자)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2007년 추진실적

구 분	신 청	추 천	비 고
2007	110건/1,662,400천원	105건/1,574,400천원	

4.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가.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나. 개 요

1)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가)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다)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라) 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 마)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선정제외 대상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나)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다)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3) 2007년 추진실적(접수)

구 분	계	만수주공	삼산주공	갈산주공	연수주공	연수시영	선학시영
2007	450	342	20	15	18	27	28

5. 저소득층 생업자금 신청

가. 목 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나. 개 요

1) 용자대상

-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나) 차량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2)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3) 용자요건

- 가) 무보증대출요건(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나) 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4)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 2007년 추진실적

구 분	신 청	추 천	비 고
2007	6건/80,000천원	6건/80,000천원	

6. 의료급여사업

가. 의 의

의료급여사업은 1977. 12. 31. 법률 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써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

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행려환자, 18세미만 입양아동, 차상위 수급권자(희귀성난치성질환자)
- 2)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자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질환자
- 국가유공자 :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3등급 내지 8등급세대 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요청한 세대
- 행려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세대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 이 재 민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
- 차상위 1종 : 희귀난치질환자(개인급여)

2) 2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2종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의 아동

라.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단위 : 인)

종별	총계	1 종									2종		
		수급자	국 가 유공자	무 형 문화재	5·18 관련자	북한이 탈주민	의사자 유 족	시 설 수급자	입양 아동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만성	18세 미만
계	13,756	6,250	538	1	32	518	5	66	20	141	4,859	378	948

마.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1) 1종(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 2007. 7. 1. 시행)

○ 외래진료시 1차 : 1,000원, 2차 : 1,500원, 3차 : 2,000원, 약국 : 500원

○ 제외대상 : 18세미만아동, 임신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2) 2종 : 국가부담 85%, 본인부담 15%

바. 진료절차

1) 지참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2) 절 차 : 1차, 2차, 3차 3단계로 하며 진료기관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한다.

사. 의료급여 사업

1)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가) 목적 : 의료급여 대상자로 본인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한다.

나) 지원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과다납부 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확인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결정후 지원

다) 2007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환급금	5,657천원	297명	국비:80,시비:20	

2)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 가) 목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하여 의료급여 부담 감소에 기여한다.
- 나) 지원절차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비가 월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보상, 2종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급여 범위내 (본인부담금 15%,비급여제외)진료를 받은후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 후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다) 2007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보상금	11,347천원	100명	국비:80, 시비:20	

3)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가) 목 적 :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요양비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에 기여한다
- 나) 지원절차
- (1) 복막투석비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해 사용한 수급자가 요양비명세서 및 처방전,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류를 신청을 받은 후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전액,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처방전 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 (2) 산소치료요양비 : 의료급여대상자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산소발생기를 임차하여 제공받은 경우만 요양비 지급)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받은 후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120천원,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102천원 지원한다.

다) 2007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복막투석비	28,810천원	2명(14회)	국비 : 80%, 시비: 20%	
산소치료요양비	2,106천원	4명(16회)	국비 : 80%, 시비: 20%	

4)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가) 목 적 :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한다.

나) 지원절차 : 의료급여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고 구청에 신청후 적격여부 판단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여 구비서류(처방전, 검수확인서,보장구영수증,통장사본)를 첨부하여 보장구 구입비를 청구하면 보장구별 지원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다) 2007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2,519천원	102명	국바: 80%, 시바: 20%	

라) 사후관리

○ 내구연한(6년)내에 1인당 1회 지원하며,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이 부담한다.

○ 보장구에 사용되는 건전지등 소모품의 구입비 및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가) 목 적 :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불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경 감에 기여한다.

나) 지원절차 :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 대불신청 하면 병원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지원하며, 대불금 지원후 3개월 경과 후 3개월마다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한다.

다) 2007년 처리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대불현황		부과액		상환액		타지역전출		체납액		비고
대불금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45	34,088	1	659	5	3,522	5	2,199	36	29,026	

라) 사후관리

○ 대불금채납자에게 독촉고지서 월 1회 발송

○ 대불금채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결손처분)는 연 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 대불금 상환

6)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가) 목 적 :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나)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상해외인 및 의료급여기관(병원)의 정산심사, 원외처방, 중복청구로 인한 부당의료비

다) 2007년 처리현황

(단위: 명,천원)

구 분	부당이득현황		부과액		상환액		타지역전출		체납액		비고
부 당 이득금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56	133,351	9	34,161	10	6,086	4	32,870	51	128,557	

라) 사후관리

- 부당이득금체납자 독촉고지서 월1회 발송
- 부당이득금체납자 전수조사 연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 부당이득금 상환

7)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가) 목 적 :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정보, 상담서비스 및 지원을 연계하여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지원에 기여한다.

나) 대 상 :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이용자 중 건강관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과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전년도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

다) 처리절차 : 직접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목적,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최종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과다의료 기관방문, 과다한 약제복용,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올바른 의료이용 행태를 교육하고 수행기록지 작성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건강관리실 등을 연계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라) 2007년 처리현황 : 2005년 78건, 2006년 106건, 2007년 1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사례관리사 1인당 100명 대상자의 사례 관리가 목표

8)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가) 목 적 :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기여한다.

나) 대 상 : 11개 고시질환으로 485일을 초과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자발적 참여자

다) 지원절차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선택병의원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택 의료급여기관 대상자 기준에 해당시 해당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적용 통보서를 발부하고 선택병의원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라) 2007년 처리현황

구 분	건수	자발적참여자	조건부승인	비 고
선택병의원제	303건	47건	256건	

9) 의료급여 상해외인 관리

가) 목 적 :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있어 수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나) 처리절차

- (1) 100만원 이하 : 시군구 조사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조사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료기관 및 대상자를 조사하여 상해외인 여부 판단하여 공단통보 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 (2)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공단 조사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조사하고 보장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 내역서를 통보받아 상해외인

여부판단하여 공단에 재통보한 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다) 2007년 처리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건수	통보금액	정당급여	부당이득
100만원이상	215	518,538	480,589	37,949
100만원이하	88	61,960	41,802	20,158

10) 의료급여 중복청구

가) 목 적 :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중청구 된 자료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적용여부 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한다.

나)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수급권자의 중복 청구가 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각 의료기관으로 중복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후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환수 및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다) 2007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수	정당급여	환수대상
중복청구	224	196	28

라) 기 타 : 이의신청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판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복청구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도록 한다.

마) 향후발전방향 및 전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급여사업 홍보를 통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며, 사례관리를 통한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로 적절한 의료혜택 제공에 기여한다.

7. 행려자 처리

가. 목 적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공공구호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하여야 함

나. 개 요

1) 관련법령

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시체등의 처리)

2) 행려자 처리 절차

가) 일반행려자

(1) 임시거처, 숙식제공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나) 행려사망자

(1)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

다. 2007년 실적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실적 없음